

<성건세법> 9 월 1 일 공식 발효, 시행 중점 내용 살펴보기

2021 년 8 월

Issue 20

개요

2020 년 8 월 11 일, 제 13 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시유호건설세법>¹(이하 <성건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성건세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발효되어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성시유호건설세 잠정조례>(이하 <성건세조례>)를 대체했습니다.

PwC 는 지난 <News Flash>²에서 <성건세법>의 주요 변화와 요점을 소개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2021 년 8 월 말, <성시유호건설세 과세표준 결정 방법 등 사항에 관한 재정부/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 28 호, 이하 "28 호 공고")³와 <성시유호건설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 26 호, 이하 "26 호 공고")⁴가 공식 발표되면서, 성건세 및 부가세목/비용의 과세표준, 징수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부 미결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News Flash>에서는 공고 규정과 현재 징수관리 상의 실무 사항을 종합하여 <성건세법> 공식 발효 후 시행 요점을 정리해보고 PwC 의 관찰과 제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시행 요점 1: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 시의 성건세 처리

현행 <성건세조례>에서의 처리

성건세는 납세자가 법에 의거 실제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재세자[1985]69 호문 제 3 조는 해관이 수입제품에 대해 대리 징수하는 상품세, 증치세에 대해서는 성시유호건설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성건세조례> 하 해당 상황에서 성건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문서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경내 매입자는 통상적으로 대외송금 시 해외 업체 또는 개인을 위해 증치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동시에 성건세 등 부가세목/비용도 함께 원천징수했습니다.

<성건세법> 규정

<성건세법> 제 3 조는 수입제품 또는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판매한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에 대해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 세액에 대해 성건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8 조는 성건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치세, 소비세 원천징수의무를 지닌 업체 및 개인이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함과 동시에 성건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판매한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의 경내 구매자는 증치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여전히 성건세의 원천징수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할까요?

공고 규정

28 호 공고 제 1 조에 따르면, 성건세의 과세표준인 법에 의거 실제 납부한 두가지 세금이란 납세자가 증치세, 소비세 관련 법률 법규 및 조세 정책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두가지 세금을 말하며, **수입화물 또는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판매한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에 대해 납부한 두가지 세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6 호 공고도 증치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성건세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판매한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의 증치세 원천징수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건세법> 시행 후, 수입제품 또는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판매한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에 대해 납부한 증치세 및 소비세(있는 경우)는 모두 더이상 성건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건세법> 제 3 조에 규정된 성건세 비과세 상황은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증치세 관련 법규를 종합해 볼 때,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위치한 부동산 판매 시에는 여전히 증치세 및 성건세 등 부가세목/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 요점 2: 면저세액(免抵稅額, 공제/감면세액)의 성건세 과세여부 명확화

면저세액이 성건세 과세표준인지 여부에 관해, 국가세무총국은 생산형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재세[2005]25 호문(이하 "25 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가세무국의 공식 심사 승인을 받은 당기 증치세 면저세액은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의 과세 범위에 포함되며, 각각 규정된 세율에 따라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형 수출 기업은 계속 25 호문 규정에 따라 집행해 왔으나 Cross-Border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기타 기업의 면저세액이 성건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없었으며, 현재 지역별 실무 적용 사항은 각기 상이합니다.

그러나, 28 호 공고 제 1 조는 <성건세법> 발효 후 증치세 면저세액에 대해서도 성건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에 의거 실제 납부한 두가지 세금은 납세자가 증치세, 소비세 관련 법률 법규 및 조세 정책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두가지 세금(수입화물 또는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판매한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에 대해 납부한 두가지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에 **증치세 면저세액을 더하고**, 직접 감면받은 두가지 세금과 환급받은 증치세기말미공제세액(기말류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건세법>과 28 호 공고 발효(즉, 2021 년 9 월 1 일) 이후, 일부 성시의 성건세 과세표준은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 호 공고 제 3 조는 또한 면저세액의 성건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치세 면저세액의 성건세 징수의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이 면저세액을 승인한 다음번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각 성시의 기업에 대한 증치세 면저세액의 성건세 징수 신고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성시는 납세자가 증치세 면저세액 신고 당월에 성건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성시는 익월에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 년 9 월 1 일 이후 일부 기업은 면저세액의 성건세 신고 기간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요점 3: 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와 성건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함 명확화

성건세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도 증치세/소비세 세금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성건세법> 발표 후, <교육비부가 징수 잠정규정>은 아직 성건세 과세표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건세법> 발효 후, 상기 시행 요점 1, 2 에서 설명한 성건세 정책 변화가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의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줄까요?

28 호 공고는 이에 대해 명확한 징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과세표준은 성시유호건설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즉 수입화물 또는 해외 업체 및 개인이 경내에 판매한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은 성건세를 징수하지 않음과 동시에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도 징수하지 않는 반면, 증치세 면저세액은 성건세와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모두 징수합니다. 이는 현행 증치세 신고 시스템의 자동 연동 관계와도 일치합니다.

시행 요점 4: 성건세 적용 세율의 변화

현행 <성건세조례>와 <성건세법>에 따르면, 성건세 세율은 납세자의 소재지에 따라 1%, 5%, 7%로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납세자의 소재지"란 납세자 주소지 또는 납세자의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기타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지점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결정합니다.

일부 성시는 "납세자의 소재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이미 지방 법규를 발표했거나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성건세법> 및 지방 법규에 따라 납세자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납세자 소재지 지역의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성건세 적용 세율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지 성건세 세율의 잠재적인 변화와 세부담에 대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핵심 요약

<성건세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들은 <성건세법> 공식 시행 후 발생할 실무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PwC 는 기업들이 각 지방의 실무 사항에 관해 세무기관과 사전에 커뮤니케이션하여 확인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성건세는 증치세, 소비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증치세와 소비세의 입법 또한 <국무원 2021 년도 입법 업무 계획>에 있는 바, 이후 증치세, 소비세의 관련 규정 및 징수관리 요건 또한 성건세의 징수/납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 진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향 금액을 추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한편, 적시에 세무 전문 인력의 도움을 구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주석

1. <중화인민공화국 성시유호건설세법>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008/t20200812_3566258.htm
2. News Flash Issue 23 <성건세, 계세 입법의 주요 변화 및 요약> 참고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0q3/chinatax-news-aug2020-23.pdf>
3. <재정부, 세무총국 성시유호건설세 과세표준 결정 방법 등 사항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 28 호)
http://szs.mof.gov.cn/zhengcefabu/202108/t20210825_3747865.htm
4. <국가세무총국 성시유호건설세 징수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 26 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5/c5168590/content.html>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Partne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정자현**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n.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 2021 年 8 月 30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威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